

2022년도
심천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감사내용 》

■ 기간 및 범위

- 2022. 2. 7. ~ 2. 10.(4일간) / 2019. 1월부터

■ 감사반 : 기획감사관 외 5명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민원처리 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각종 소관업무 확인, 점검, 관리 등 업무처리실태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20건

■ 조치계획

- 행정상 조치 : 20건 (주의 8건, 시정 12건)
- 재정상 조치 : 회수 6건 / 8,631,55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 없음

《 수범사례 》

■ 농림분야 보조사업(농기계 및 시설) 100% 선정 지원

- 농업기계화 선도 및 농가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

■ 한눈에 알아보는 민원절차 안내문 및 군정홍보 게시판 제작

- 민원실 창구 앞에 출생, 사망신고 등 각종 민원절차 안내문 게시

■ 심천면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사업 적극 추진

- 문화, 복지, 보육 등 기능 확충 및 배후 마을 연계프로그램 운영

■ 심천e음을 활용하여 적극행정 추진

- 실시간 전자공문함 / 마을별 홍보사항이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전달

- 붙임 1. 주요 지적사항 1부.
2. 감사결과 처분서 20부. 끝.

심천면 감사결과 처분사항(총괄)

연번	부서명	지 적 사 항	처분(안)		
			행정상	신분상	금액
총계	심천면	총 20건 [공통4, 총무6, 맞춤형복지3, 민원봉사4, 산업3]	주의 8 시정 12		6건 8,631,550원
1	공통	◦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이행 소홀	시정		
2		◦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부적정	시정		
3		◦ 공무원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소홀	주의		
4		◦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시정		회수 130,680원
5	총무	◦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		
6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시정		세입(환급)조치 6,267,770원
7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미공개	시정		
8		◦ 청사 소방안전관리 소홀	주의		
9		◦ 이장 월정수당 지급업무 소홀	주의		
10		◦ 시설공사 등 하자검사 추진 소홀	주의		
11	맞춤형복지	◦ 폐기물 운반차량 구조변경 계약 집행 부적정	주의		
12		◦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세입조치 소홀	주의		
13		◦ 국내출장여비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36,400원
14	민원봉사	◦ 인증기용 증지수입 세입처리 지연 및 관리소홀	시정		세입조치 350,700원
15		◦ 이륜자동차 변경(상속)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	시정		
16		◦ 이륜자동차 (변경)사용신고 등 업무처리 소홀	주의		
17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구 부적정	주의		
18	산업	◦ 표시기간 만료된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	시정		
19		◦ 시설공사 간접공사비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1,079,000원
20		◦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767,000원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이행 소홀

【현 황】

○ 업무 인계·인수 전자결재 내역

연번	인계자		인수자		담당일	전자결재 여부	비고
	직급	성명	직급	성명			
1	**7급	X	**9급	C	2021.10.06.	부	맞춤형복지팀
2	**8급	T	**9급	D	2021.10.06.	부	민원봉사팀
3	**7급	G	**9급	E	2021.10.06.	부	산업팀
4	**9급	U	**9급	F	2021.10.18.	부	산업팀

【위법부당사항】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영 제61조에 따라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행정과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이행 철저[행정과-19286(2020. 9.11.)호]」 공문을 시행하여 모든 군 소속 공무원은 인사이동(조직개편, 업무분장 변동 포함)에 따른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를 이행하되, 팀장급은 온나라 인계·인수 입력 완료 후 인계인수서를 출력하여 행정과로 제출하고, 팀원은 온나라 인계·인수 입력 완료 후 인계인수서 부서장 결재하여 자체보관 토록 하였음.
- 그러나, 군수님 지시사항 이후 심천면 직원들의 업무 인계·인수 전자 결재 내역을 감사일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현황]과 같이 4건의 인사 이동(인사발령 및 업무분장 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이행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누락된 인계·인수를 이행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부적정

【현 황】

○ 부적정 매입 내역

(단위:천원)

지 출 건 명	지급일	매입기준액	매입가 (a)	적정가격 (b)	차액 (a-b)	비고
○○○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준공금 지급	2019.05.24.	9,178	230	220	10	과다매입
□□□ □□ 정비공사 준공금 지급	2019.06.20.	11,759	330	290	40	과다매입
△△△ 농로 포장공사 준공금 지급	2019.07.31.	9,140	240	220	20	과다매입
◇◇◇ 배수로 정비공사 준공금 지급	2020.06.10.	7,560	190	180	10	과다매입
☆☆☆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준공금 지급	2020.07.23.	13,551	350	330	20	과다매입
◎◎◎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준공금 지급	2020.12.14.	7,305	190	180	10	과다매입
▽▽▽ 배수로 및 농로정비공사 준공금 지급	2020.12.10.	15,947	380	390	-10	과소매입
♣♣♣ 마을진출입로 확장공사 준공금 지급	2021.11.23.	23,198	580	570	10	과다매입

【위법부당사항】

- 지역개발채권(공채)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 (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1항『별표1』(공채매입의 대상 및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은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은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100로 매입하여야 하고,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10,000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10,000원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심천면에서는 2019.05.24. 지급한 ‘○○○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공사 준공금 지급’ 외 7건에 대하여 적정가격을 초과하거나 과소 매입한 필증을 접수하는 등 지역개발채권 징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과소매입 된 건에 대해 추가매입 조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무원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소홀

【현 황】

관리부서	사업명	대상자		채용 교육	정기교육				비고
		근로자수	근로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맞춤형복지팀	복지회관 관리	1	20.1.2.~12.28.	○ (시간 미기재)	6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	
맞춤형복지팀	방역소독인부	1	20.6.8.~9.30.	○ (시간 미기재)	해당 없음	6시간	6시간	해당 없음	
맞춤형복지팀	대청호 환경정비	2	20.6.22.~11.30.	○ (시간 미기재)	해당 없음	6시간	6시간	6시간	
산업팀	봄철 산불감시원	11	20.2.1.~ 5.15.	-	○	6시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산업팀	향토노원관리	4	20.4.20.~4.29.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	20.5.13.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	20.5.13.~ 5.14.	8시간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	20.5.16.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7	20.5.19.~ 5.22.	8시간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	20.5.27.~ 6.5.	8시간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7	20.9.17.~9.18.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산업팀	낙시산업 선진화	2	20.10.21.~11.30.	8시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산업팀	가을철 산불감시	12	20.11.1.~12.15.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6시간	
맞춤형복지팀	장애인행정도우미	2	21.1.1.~12.31.	8시간	6시간	3시간	3시간	-	
맞춤형복지팀	환경미화원	3	21.1.1.~12.31.	해당 없음	6시간	6시간	6시간	2시간	
맞춤형복지팀	복지회관 관리	1	21.3.17.~12.27.	8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	-	
맞춤형복지팀	방역소독인부	1	21.6.21.~9.30.	8시간	해당 없음	-	8시간	해당 없음	
맞춤형복지팀	대청호 환경정비	2	21.6.28.~10.27.	-	해당 없음	-	-	해당 없음	
산업팀	3대 직불제	1	21.4.1.~ 8.13.	8시간	해당 없음	6시간	-	해당 없음	
산업팀	농지이용실태조사	81	21.5.3.~ 11.30.	-	해당 없음	6시간	6시간	-	

산업팀	봄철 산불감시원	13	21.2.1.~ 5.15.	-	6시간	6시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산업팀	향토노원관리	7	21.6.9.~6.10.	-	해당 없음	6시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7	21.9.4.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7	21.10.02.~10.3.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산업팀	가을철 산불감시	15	21.11.1.~12.20.	8시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위법부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고,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¹⁾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 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 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²⁾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읍·면에서는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신규 채용 시 일용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이상의 신규채용교육을 이행하여야 하며, 채용 이후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무직 종사

1)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가. 정기교육(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등

근로자의 경우 분기별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의 경우 분기별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이행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그러나, 2020년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심천면에서 채용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황]과 같이 신규 채용 시 교육 및 정기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30,68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현 황】

○ 특별휴가 사용현황(사용일수 및 특가구분 오류)

연번	사용일자	직급	성명	특가구분	특가사유	지적사항	비고
1	2019.01.15.	**7급	A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보육	증빙서류 미첨부	
2	2019.02.18.	**7급	A	가족돌봄휴가 (유급)	만4세이하 자녀보육 특별휴가	증빙서류 미첨부	
3	2019.04.10.	**7급	A	가족돌봄휴가 (유급)	만4세미만 자녀보육	증빙서류 미첨부	
4	2019.09.10.	**7급	A	기타	미성년자 자녀 병원진료	특가사유 부적정 증빙서류 미첨부	2일 초과사용
5	2019.10.14.	**7급	A	기타	미성년자 자녀 병원진료	특가사유 부적정 증빙서류 미첨부	
6	2019.10.17.	**7급	A	기타	자녀 입원에 따른 휴가(간병휴가)	증빙서류 미첨부	
7	2020.04.22.	**7급	A	가족돌봄휴가 (유급)	2자녀 자녀돌봄	증빙서류 미첨부	
8	2020.05.29.	**7급	A	가족돌봄휴가 (유급)	2자녀 자녀돌봄	증빙서류 미첨부	
9	2020.06.23.	**7급	B	경조사휴가	특별휴가	특가사유 부적정	
10	2020.11.02.	**7급	C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 예방접종	증빙서류 미첨부	
11	2020.11.20.	**7급	D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 병원동행	증빙서류 미첨부	
12	2020.12.31.	**7급	E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 초등학교 예비소집 참석	증빙서류 미첨부	
13	2020.06.26.	**8급	F	포상휴가	가사정리	특가사유 부적정	
14	2021.01.18.	**6급	G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 병원동행	증빙서류 미첨부	
15	2021.03.02.	**7급	E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 입학식 참석	증빙서류 미첨부	주민등록등본 미첨부
16	2021.03.02.	**7급	C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 입학식	증빙서류 미첨부	주민등록등본 미첨부
17	2021.03.24.	**6급	G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 병원동행	증빙서류 미첨부	

18	2021.06.11.	**7급	E	가족돌봄휴가 (유급)	원격수업에 따른 자녀돌봄	증빙서류 미첨부	
19	2021.06.17.	**7급	E	가족돌봄휴가 (유급)	원격수업에 따른 자녀돌봄	증빙서류 미첨부	관련서류 미첨부
20	2021.07.23.	**6급	H	가족돌봄휴가 (유급)	자녀돌봄	증빙서류 미첨부	주민등록등본 미첨부
21	2021.09.24.	**7급	I	가족돌봄휴가 (유급)	학교재량휴업에 따른 자녀돌봄	증빙서류 미첨부	주민등록등본 미첨부

○ 연가보상비 초과수령 내역

연번	직급	성명	초과수령일수	총 초과수령액	비고
계				130,680	
1	**7급	A	2	130,680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9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각 호의 가족 돌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10항에 의하면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알림(행정과-14424, 2019.06.28.)에 따르면 특별휴가 상신 시 관련 증빙서류(알림장, 행사안내문, 주민등록등본(매년 최초 신청 시 1회 첨부))를 첨부하여야 하고, 간병휴가의 경우 자녀 등 가족이 7일 이상 입원 시 병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5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하지만, 심천면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특별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7급 A 외 8명, 21건에 대한 결재 상신 시 특가사유 부적정 및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특히 **7급 A는 미성년 자녀돌봄을 위한 특별휴가를 사용하면서 부여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특별휴가(간병휴가)를 2일 초과사용하여 130,680원의 연가보상비를 초과 수령하였으며, 2019. 10. 10. ~ 10. 17.까지 8일

간 자녀의 입원으로 인한 간병휴가 상신 시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등 특별휴가 사용절차 및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 130,68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현 황】

1. 법인카드 관리 현황

발급일자	카드번호	보관책임자		용도	담당일
		직	성명		
15.05.12.	****-****-****-9468 ****-****-****-9690	**9급	H	일반결제, 자동이체	2018.10.01.
20.02.12.	****-****-****-0618 ****-****-****-0618	**9급	J	일반결제, 자동이체	2019.09.10.
20.02.12.	****-****-****-0618 ****-****-****-0618	**8급	K	일반결제, 자동이체	2020.07.10.
20.02.12.	****-****-****-0618 ****-****-****-0618	**9급	L	일반결제, 자동이체	2022.01.10.

2. 법인카드 발급대장 정리 현황[사진]

3. 카드 사용내역 보고 현황

연도	보고	미보고	비고
2019년	1월~5월, 7월~12월	6월	
2020년	1월~7월	8월~12월	
2021년	7월~12월	1월~6월	

4. 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현황

연도	포인트 적립액	현금전환일	현금전환금액(원)	비고
2019년	185,797	2019.04.22.	185,800	
2020년				미 조치
2021년	207,147	2021.12.22.	207,140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후임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다.
- 또한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까지 보고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
- 그러나 심천면에서는 위 [현황2]와 같이 보유중인 법인카드에 대하여 인사이동에 따른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음에도 신용카드 발급대장 작성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현황3]과 같이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였고, [현황4]와 같이 2020년에는 카드 포인트를 세입조치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누락된 신용카드 발급대장 내역을 정비하여 주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세입(환급)조치 6,267,77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현 황】

1. 심천면 세입세출외현금 현황(2021.12.31.기준)

과목	적요	채주	금액(원)	비고
합 계			6,267,770	
	2020년 이월액	영□□□	3,812,270	2020년 이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영□□□ 외 32명	1,882,090	2021년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급금	영□□□ 외 32명	354,740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 환급금	영□□□ 외 32명	218,670	

2. 세입세출외현금 대상자별 환급금 세부내역

과목	적요	환급대상	환급액 (대상자별)	총금액
				6,267,770
건강보험료	2018년 ○○○○ 기간제근로자 장기요양환급	영□□□	4,680	9,360
		이□□	4,680	
건강보험료	2018년 ○○○○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환급	영□□□	970	1,940
		이□□ 외1	970	
건강보험료	2018년 ○○○○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환급	영□□□	13,140	26,280
		이□□	7,890	
		임□□	5,250	
건강보험료	2018년 ○○○○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환급	영□□□	62,840	125,680
		이□□	62,840	
건강보험료	2018년 ○○○○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환급	영□□□	2,640	5,280
		정□□	2,640	
건강보험료	2018년 ○○○○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환급	영□□□	34,990	69,980
		정□□	34,990	
건강보험료	2018년 ○○○○ 기간제근로자 장기요양환급	영□□□	550	1,100
		안□□	550	

건강보험료	2018년 ○○○○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환급	영□□□	7,480	14,970
		안□□	7,490	
건강보험료	2018년 가을철 ○○○○ 장기요양 환급	강□□ 외10	282,445	565,010
		영□□□	282,565	
건강보험료	2018년 가을철 ○○○○ 건강보험 환급	강□□ 외10	20,700	41,440
		영□□□	20,740	
건강보험료	2019년 4월 ○○○○ 건강 환급	영□□□	13,080	26,160
		이□□	13,080	
건강보험료	2019년 봄철 ○○○○ 장기요양 환급	-	-	51,220
건강보험료	2019년 봄철 ○○○○ 건강보험 환급	-	-	605,440
건강보험료	2018년 ○○○○ 쓰레기 수거사업 장기요양 환급	박□□	2,550	10,200
		이□□	2,550	
		영□□□	5,100	
건강보험료	2018년 ○○○○ 쓰레기 수거사업 건강보험 환급	박□□	34,480	137,920
		이□□	34,480	
		영□□□	68,960	
건강보험료	2018년 ○○○○ 쓰레기 수거사업 장기요양 환급	박□□	640	2,560
		이□□	640	
		영□□□	1,280	
건강보험료	2018년 ○○○○ 쓰레기 수거사업 장기요양 환급	박□□	8,530	34,110
		이□□	8,530	
		영□□□	17,050	
고용보험료	2018년 ○○○○ 고용환급금	-	-	127,050
고용보험료	2018년 ○○○○ 기간제근로자 과오납실업	-	-	7,590
고용보험료	2018년 ○○○○ 기간제근로자 과오납고용	-	-	4,960
고용보험료	2019년 4월 ○○○○ 고용 환급	이□□	1,140	3,770
		영□□□	2,630	
고용보험료	2018년 ○○○○ 기간제근로자 환급	-	-	267,240
고용보험료	2017년 ○○ 기간제근로자 과오납고용	-	-	6,820
고용보험료	2017년 ○○ 기간제근로자 과오납실업	-	-	10,450
고용보험료	사업장관리 과오납 고용 환급금	-	-	91,050
고용보험료	사업장관리 과오납 실업 환급금	-	-	85,730
고용보험료	과오납 고용 환급금	-	-	2,810
고용보험료	과오납 실업 환급금	-	-	4,300
산재보험료	2018년 ○○○○ 산재환급금	영□□□	190,570	190,570
산재보험료	2018년 ○○ 기간제근로자 과오납산재	영□□□	18,690	18,690
산재보험료	2019년 4월 ○○○○ 산재 환급금	영□□□	1,840	1,840
산재보험료	2017년 ○○ 기간제근로자 과오납산재	영□□□	6,420	6,420

산재보험료	사업장관리 과오납 산재환급금	영□□□	112,550	112,550
산재보험료	과오납 산재 환급금	영□□□	3,470	3,470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	-	1,138,310
고용보험료	2021년 6월 고용보험료 환급금	영□□□	157,950	211,430
		안□□ 외7	53,480	
산재보험료	2021년 6월 산재보험료 환급금	영□□□	123,230	123,230
고용보험료	2021년 9월 고용보험료 환급금	영□□□	112,160	143,310
		서□□ 외3	31,150	
산재보험료	2021년 9월 산재보험료 환급금	영□□□	95,440	95,440
건강보험료	2021년 9월 건강보험료 환급금	-	-	997,140
건강보험료	2021년 9월 건강보험료 환급금	최□□	44,130	91,930
건강보험료	2021년 9월 건강보험료 환급금	서□□	1,830	
건강보험료	2021년 9월 건강보험료 환급금	영□□□	45,970	31,210
건강보험료	2021년 9월 건강보험료 환급금	이□□	7,800	
		박□□	7,800	
건강보험료	2021년 9월 건강보험료 환급금	영□□□	15,610	
건강보험료	2021년 11월 건강보험료 환급금	서□□	31,325	62,650
		영□□□	31,325	
건강보험료	2021년 11월 건강보험료 환급금	이□□ 외2	150,030	300,070
		영□□□	150,040	
건강보험료	2021년 11월 건강보험료 환급금	경□□ 외8	199,540	399,090
		영□□□	199,550	

【위법부당사항】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시행령 4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공공시설 손실 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 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심천면에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보관하는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의 운영 계좌로 사용해야 함.

- 그러나 심천면에서는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계좌로 사용해야 할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2020년도 이월액 3,812,270원을 포함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 총6,267,77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6,267,770원의 미처리된 잔액을 세입 또는 환급조치 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미공개**

【현 황】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미공개 현황

연도	공개 세부내역	미공개 세부내역	비고 (미공개 기간)
2019년	-	2019.01.~12.	12개월
2020년	2020.01.~05.	2020.06.~12.	7개월
2021년	-	2021.01.~12.	12개월

※ 영동군 홈페이지 정보공개 업무추진비 공개자료 재구성

【위법부당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용내역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확대 시행으로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또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806(2020.2.25.)호와 관련하여 2020. 3. 3일 행정과에서 발송한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공개 확대 시행에 따른 정비 요청」 공문에 따르면,
- “단체장, 과장급이상, 부서별, 지방의원, 소속기관장 등은 ‘목적, 대상, 금액, 방법, 장소, 사용일시, 대상 수(인원)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영동군 홈페이지에 공개’ 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심천면에서는 [현황]과 같이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간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만 공개되어 있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미공개 건에 대해 즉시 공개 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청사 소방안전관리 소홀

【현 황】

연도	소방계획서 수립여부	자체소방훈련 및 교육현황	소방시설 점검여부	비고
2019	미수립	미실시	부	
2020	미수립	미실시	부	
2021	미수립	21.11.16.	부	실시결과 기록없음

【위법부당사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구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기관장의 책임)에서는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감독책임이 있다 규정함.
- 또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

이거나 같은 규정 제5조제1항 가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함.

- 그러나, 심천면에서는 【현황】에서와 같이 2019~2021년 소방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이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2019년, 2020년에는 자체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고, 2021년도에는 직장자위대 편성반을 활용하여 자체소방훈련을 실시계획만 있을 뿐 그 밖에 훈련과 관련된 기록도 보관한 사실이 없는 등 공공기관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홀히 함.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이장 월정수당 지급업무 소홀

【현 황】

○ 수당지급 지연 내역

(단위:천원)

적 요	채 권 자	지급명령 번호	실지급일	정당지급일	지급액	비고
2019년 1월 이장수당	민□□외 20	00000022	2019.01.25.	2019.01.18.	4,000	7일 지연지급
2019년 3월 이장수당	민□□외 19	00000110	2019.03.15.	2019.03.20.	4,000	5일 조기지급
2019년 5월 이장수당	배□□외 19	00000212	2019.05.17.	2019.05.20.	4,000	3일 조기지급
2020년 12월 이장수당	배□□외 19	00000574	2020.12.24.	2020.12.18.	6,000	6일 지연지급
2021년 8월 이장수당	이□□외 19	00000300	2021.08.19.	2021.08.20.	6,000	1일 조기지급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실비변상)에 따라 이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그럼에도, 심천면에서는 19년 1월 외 4건의 이장 월정수당을 지급 하면서, 공무원 보수 지급일인 20일에 지급하지 않고 조기 또는 지연 지급하여 이장 월정수당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등 하자검사 추진 소홀

【현 황】

- [붙임1] 정기 하자검사 대상 내역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담보책임의존속기간) 및 제70조(하자검사)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설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 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심천면에서는 2019년도 하반기에 <□□□□ 농로포장공사> 등 65건, 2020년도 상반기에 <□□□ 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 등 60건, 2021년도 상반기에 <□□□□ 농로포장공사> 등 87건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로 시행해야 하는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시설공사 준공에 따른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폐기물 운반차량 구조변경 계약 집행 부적정

【현 황】

○ 구조변경 관련 계약 현황

계약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금액 (천원)	계 약 상대방	계약내용	비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1톤 트럭용 덤프장치 설치	'21.3.10	'21.3.19	11,000	□□ □□□	1톤 트럭용 덤프장치 설치	구조변경 등록완료

【위법부당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237호)」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시에는 덮개의 재질과 형태 및 구조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심천면에서는 폐기물 수입·운반차량에 대한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환경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과 지방계약법상 계약상대방에 대한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검수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폐기물 운반차량 구조변경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차량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차량차체용적재함(G2B 분류번호: ○○○○○○○○○○○) 제조로 등록한 업체이거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또는 『자동차 종합정비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상대방을 선정하여야 하나, 계약상대방인 ‘□□□□□’는 철구조물제작으로 사업자등록된 업체로 폐기물 운반차량 구조변경에 적합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 또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 237호)」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의 재질, 형태 및 구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또한 확인할 수 없음.
-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구조변경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의 성질상 물품 제조·구매 계약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용역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역개발공채를 물품 제조·구매 계약시의 매입기준인 100분의 1.5인 15만원보다 1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소화하였음. 또한,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및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규정에 따라 물품 제조시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든지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든지 했어야 하나, 하자보증금 지급확약서로 처리하였음.
- 위와 같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구조변경을 위한 계약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종류, 덮개의 재질과 형태 및 구조 기준, 계약상대방 적격여부 등에 대한 검토 및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하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세입조치 소홀

【현 황】

○ 지연처리내역(감사대상 기간 중 2021년 10월~12월 신고분 표본 추출)

연번	신고일	신고자	금액	수납일	지연일	비고
합계			1,157,000			
1	2021.09.30. ~ 2021.10.01.	박□□ 외4	50,000	2021-10-05	1일	
2	2021.10.05. ~ 2021.10.06.	전□□ 외10	112,000	2021-10-12	1일~3일	
3	2021.10.08. ~ 2021.10.13.	김□□ 외5	98,000	2021-10-15	1일~3일	
4	2021.10.15. ~ 2021.10.28.	양□□ 외12	109,000	2021-11-01	1일~10일	
5	2021.11.01. ~ 2021.11.03.	김□□ 외10	59,000	2021-11-04	1일~2일	
6	2021.11.04. ~ 2021.11.10.	오□□ 외10	87,000	2021-11-11	1일~4일	
7	2021.11.12. ~ 2021.11.22.	공□□ 외11	76,000	2021-11-23	1일~6일	
8	2021.11.23. ~ 2021.11.30.	김□□ 외8	38,000	2021-12-02	1일~6일	
9	2021.12.01. ~ 2021.12.06.	박□□ 외9	171,000	2021-12-08	1일~4일	
10	2021.12.08. ~ 2021.12.10.	민□□ 외3	44,000	2021-12-14	1일~3일	
11	2021.12.14. ~ 2021.12.21.	김□□ 외11	169,000	2021-12-22	1일~5일	
12	2021.12.22. ~ 2021.12.29.	김□□ 외6	144,000	2021-12-31	1일~6일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대형폐기물은 주소, 성명, 배출일시, 폐기물명, 수량 등을 거주지 읍장·면장에게 신고

하여 별표2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후 별표6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토록 되어 있음.

- 아울러, 「지방회계법」 제22조(수납기관)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수입금의 납입)에 따르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金庫)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수납한 날의 다음 날
 2. 그 밖의 경우: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 그럼에도, 심천면에서는 민원인에게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징수한 수수료를 즉시 징수결의 절차를 거쳐 수납한 날의 다음 날에 금고에 납입하여 세입처리 하여야 함에도 감사 대상기간 중 2021년도 10월~12월에만 총 12건, 총1,157,000원의 수입금 납입을 최소 1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36,4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국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현 황】

○ 근무지 외 국내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내역

지급일	대상자	출장일	출장내용	구분	지급액 (원)	적정 지급액 (원)	과오 지급액 (원)	부적정 사유
합 계					69,400	33,000	36,400	
2019.01.31.	**7급 H	2019.01.31.	2019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지침교육 참석	일비	20,000	10,000	10,000	공용차량 사용
				식비	6,500	6,500	0	
				교통비	16,400	0	16,400	
2019.04.30.	**7급 H	2019.04.30.	기초연금 권역별 직무교육	일비	20,000	10,000	10,000	공용차량 사용
				식비	6500	6500	0	
				교통비	0	0	0	

【위법부당사항】

○ 근무지 외 국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 여행자의 일비·숙박비·식비는 별표2에 따라 지급하고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며 숙박비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고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심천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7급 H의 경우 근무지 외 국내출장여비 지급 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실시하였음에도 일비를 과다 지급하여 총 36,400원의 출장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과오지급된 출장여비 36,40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세입조치 350,7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인증기용 증지수입 세입처리 지연 및 관리 소홀

【현 황】

1. 세입처리 지연 내역(수동인증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연번	세입처리일	금액(원)	대상일	지연일	비고
합계		1,326,800			
1	2019-03-13	27,400	2019-03-08	2	
2	2019-08-01	23,700	2019-07-30	1	
3	2019-08-12	17,200	2019-08-08	1	
4	2019-08-16	17,100	2019-08-13	1	
5	2019-08-20	20,800	2019-08-16	1	
6	2019-08-26	64,100	2019-08-22	1	
7	2019-08-27	10,900	2019-08-23	1	
8	2019-09-11	5,500	2019-09-09	1	
9	2019-09-16	29,600	2019-09-06	3	
10	2019-10-14	31,500	2019-10-07	3	
11	2019-10-14	13,600	2019-10-08	2	
12	2019-10-14	23,000	2019-10-10	1	
13	2019-11-11	20,600	2019-11-06	2	
14	2019-11-12	31,900	2019-11-07	2	
15	2019-11-12	38,400	2019-11-08	1	
16	2019-11-15	4,400	2019-11-12	2	
17	2019-11-15	10,100	2019-11-13	1	
18	2019-11-18	17,800	2019-11-14	1	
19	2019-11-20	29,300	2019-11-18	1	
20	2019-11-25	15,400	2019-11-21	1	
21	2019-11-26	11,400	2019-11-22	1	
22	2019-11-27	29,300	2019-11-25	1	
23	2019-12-02	21,900	2019-11-27	2	
24	2019-12-02	36,400	2019-11-28	1	
25	2019-12-06	21,200	2019-12-04	1	
26	2019-12-09	17,800	2019-12-05	1	
27	2019-12-13	15,000	2019-12-11	1	
28	2019-12-16	29,900	2019-12-12	1	
29	2019-12-27	17,400	2019-12-24	1	
30	2020-01-09	14,500	2020-01-07	1	
31	2020-01-13	22,600	2020-01-09	1	
32	2020-04-10	10,200	2020-04-08	1	

연번	세입처리일	금액(원)	대상일	지연일	비고
33	2020-04-22	30,500	2020-04-17	2	
34	2020-04-22	44,000	2020-04-20	1	
35	2020-05-13	29,900	2020-05-11	1	
36	2020-06-10	40,900	2020-06-08	1	
37	2020-08-19	12,800	2020-08-14	1	
38	2020-08-31	11,400	2020-08-21	5	
39	2020-08-31	20,300	2020-08-27	1	
40	2021-04-19	15,400	2021-04-15	1	
41	2021-05-24	17,400	2021-05-20	1	
42	2021-07-05	20,300	2021-07-01	1	
43	2021-07-12	8,000	2021-07-08	1	
44	2021-08-23	57,200	2021-08-19	1	
45	2021-09-24	18,700	2021-09-17	1	
46	2021-10-07	18,800	2021-10-01	2	
47	2021-10-07	14,000	2021-10-05	1	
48	2021-10-19	13,000	2021-10-15	1	
49	2021-11-02	14,200	2021-10-29	1	
50	2021-11-30	19,700	2021-11-26	1	
51	2021-12-03	18,900	2021-11-30	2	
52	2021-12-03	37,800	2021-12-01	1	
53	2021-12-08	40,900	2021-12-03	2	
54	2021-12-08	15,400	2021-12-06	1	
55	2021-12-13	30,700	2021-12-08	2	
56	2021-12-13	23,400	2021-12-09	1	
57	2021-12-14	25,000	2021-12-10	1	
58	2021-12-20	7,400	2021-12-16	1	
59	2021-12-28	20,900	2021-12-24	1	

2. 세입처리 지연 내역(카드결제액)

세입처리일	금액(원)	대상일	비고
미처리	350,700	2021.10.07. ~ 감사일 현재	심천면사무소 제증명 세외수입 통장 (농협) ****-*****-*****-*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17조(요금 표시기 및 무인발급기·각 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에 따르면 판매한 증지 대금은 그 다음날 까지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각 수입금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그럼에도, 심천면에서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제증명 등의 인증기 수입을 매일 정산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해 세입처리 함에 있어 총59건, 1,326,800원에 대하여 최소 1일에서 최대 5일 동안 세입처리를 지연하였으며,
- [현황2]에서와 같이 2021년 10월 7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카드 회사로부터 「심천면사무소 제증명 세외수입 통장」으로 입금된 총350,700원의 카드결제 금액을 세입처리하지 않는 등 인증기 수입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미처리된 카드결제금액 350,700원을 세입조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이륜자동차 변경(상속)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

【현 황】

○ 이륜자동차 변경(상속)신고 위반 현황

상속인	피상속인	주소	차량번호	사망일	적정상속일	상속일	지연기간
이□□	이○○	심천면 ****	충*****	2019.12.9.	2020.6.30.	2020.7.29.	29일

※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위법부당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상속의 경우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84조제5항6호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등)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영동군 사무위임 규칙」 제2조(권한재위임사항) 별표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와 관련되어 권한이 재위임된 업무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업무는 읍·면장에 재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심천면에서는 이륜자동차 변경(상속)신고 위반자 이○○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신고·수리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과태료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누락된 과태료를 부과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이륜자동차(변경)사용신고 등 업무처리 소홀

【현 황】

○ 붙임내역 참조

【위법부당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시 구비할 서류의 종류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63호의2 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 이륜자동차 폐지신고증명서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인지세법 제8조(납부)에 따라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소인)의 규정에 의하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 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www.e-revenuestamp.or.kr)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심천면에서는 [붙임] 현황에서와 같이 이륜자동차(변경)사용신고 시 구비서류(신청서, 양도·양수증명서 작성 소홀, 첨부서류 누락 등)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륜자동차업무를 처리하였고, 특히 신고서류를 접수한 후 신고·수리하면서 인지세법에 따라 정부수입인지 발행을 확인하고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전자적 소인 처리하여 전자수입인지가 “사용” 되었음을 확인했어야 하나 전자적 소인 처리를 확인하지 않는 등 이륜자동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미비현황

연번	신고구분	신고일자	신고자	주소	차량번호	비고
1	변경	19.01.30.	최○○	심천면 ***	총*****	변경신고서 신청인 서명 누락
2	사용	19.04.17.	이○○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3	사용	19.04.17.	박○○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4	사용	19.05.01.	박○○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5	사용	19.05.03.	정○○	심천면 ***	총*****	양도·양수증명서 양수인 서명 누락,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6	사용	19.05.15.	최○○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7	변경	19.05.16.	지○○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8	사용	19.05.29.	박○○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9	사용	19.07.01.	박○○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10	사용	19.07.08.	이○○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11	사용	19.07.10.	박○○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12	사용	19.07.19.	박○○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13	변경	19.08.05.	주○○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14	사용	19.08.12.	배○○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양도·양수증명서 양도양수인 서명누락
15	사용	19.08.26.	김○○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16	사용	19.09.04.	장○○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17	변경	19.09.17.	박○○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변경신고서 미작성
18	사용	19.11.18.	정○○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19	사용	19.12.12.	민○○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양도·양수증명서 누락
20	사용	20.01.09.	박○○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1	사용	20.02.04.	박○○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양수인서명누락
22	사용	20.02.28.	엄○○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양도·양수증명서 누락
23	사용	20.03.04.	이○○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4	사용	20.06.01.	서○○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양도·양수증명서 누락
25	사용	20.06.02.	박○○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6	사용	20.06.02.	박○○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7	사용	20.07.02.	백○○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8	사용	20.07.07.	강○○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9	사용	20.08.03.	강○○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30	사용	20.08.28.	김○○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31	사용	20.09.28.	배○○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32	사용	20.10.12.	고○○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33	사용	20.10.22.	박○○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34	사용	20.11.04.	박○○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35	사용	20.11.23.	김○○	심천면 ***	총*****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 일련번호 : 1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구 부적정

【현 황】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적정 징구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재발급사유	신고일자	발급일자	수수료(원)		비고
						실수납액	정상수납액	
1	이○○	**.**.*.	한자변경	2019.01.21.	2019.02.01.	5,000	면제	
3	김○○	**.**.*.	한자변경	2019.03.28.	2019.05.07.	5,000	면제	
5	박○○	**.**.*.	한자변경	2019.12.05.	2019.12.24.	5,000	면제	
6	박○○	**.**.*.	한자변경	2020.03.23.	2020.04.10.	5,000	면제	
7	김○○	**.**.*.	한자변경	2020.06.08.	2020.07.20.	5,000	면제	
8	박○○	**.**.*.	한자변경	2020.10.06.	2020.11.03.	5,000	면제	
9	김○○	**.**.*.	한자변경	2020.10.12.	2020.11.03.	5,000	면제	
10	이○○	**.**.*.	한자변경	2021.04.26.	2021.06.04.	5,000	면제	

【위법부당사항】

○ 「주민등록법」 제2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등이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대상은 ①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으로 분실, 훼손된 경우 ②성명, 생년월일, 성별의 변경 및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④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⑤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⑥재외국민이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심천면에서는 [현황]에서와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징구하면서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이○○ 외 7명에게 수수료 면제처리를 하였어야 하나 총 4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표시기간 만료된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

【현 황】

○ 기간만료 광고물 현황

연 번	업소명	광고물종류	표시시작일자	표시종료일자	안전도검사 대상여부	비고
1	□□□□□□□□	지주이용간판	2018.11.21.	2021.11.20.	여	
2	□□□□□□	벽면이용간판(가로형)	2017.01.09.	2020.01.08.		
3	□□□□□□□□	돌출간판	2018.01.06.	2021.01.05.		
4	□□식당	벽면이용간판(가로형)	2016.12.30.	2019.12.29.		
5	□□□□□□	벽면이용간판(가로형)	2016.12.30.	2019.12.29.		
6	□□□□□□	벽면이용간판(가로형)	2016.12.30.	2019.12.29.		
7	□□주유소	벽면이용간판(가로형)	2017.08.25.	2020.08.24.	여	
8	□□식당	지주이용 간판	2016.12.30.	2019.12.29.	여	
9	□□□□□□	지주이용 간판	2017.02.18.	2020.02.17.	여	
10	□□□□	돌출간판	2017.02.18.	2020.02.17.		
11	□□□□□□□□	지주이용간판	2017.02.18.	2020.02.17.		높이 미등록
12	□□□□□□□□	지주이용간판	2016.12.30.	2019.12.29.	여	
13	□□주유소	지주이용간판	2017.08.25.	2020.08.24.	여	
14	□□□□□□	벽면이용간판(가로형)	2017.03.27.	2020.03.26.		
15	□□식당	지주이용간판	2016.12.30.	2019.12.29.	여	
16	□□□□	지주이용간판	2017.02.18.	2020.02.17.		높이 미등록
17	□□□□	벽면이용간판(가로형)	2017.02.18.	2020.02.17.		
18	□□식당	벽면이용간판(가로형)	2016.12.30.	2019.12.29.		
19	□□식당	벽면이용간판(가로형)	2016.12.30.	2019.12.29.		
20	□□식당	지주이용간판	2016.12.30.	2019.12.29.	여	
21	□□□□□□□□	지주이용간판	2017.01.09.	2020.01.08.	여	
22	□□□□□□	지주이용간판	2017.01.09.	2020.01.08.	여	
23	□□□□□□	벽면이용간판(가로형)	2017.01.09.	2020.01.08.		
24	□□□□□□□□	벽면이용간판(가로형)	2017.01.09.	2020.01.08.		
25	□□□□□□□□	지주이용간판	2016.12.18.	2019.12.17.	여	
26	□□미용실	돌출간판	2016.12.30.	2019.12.29.		

27	□□□□□	지주이용간판	2016.12.19.	2019.12.18.	여	
28	□□□□□□	지주이용간판	2017.01.09.	2020.01.08.	여	
29	□□식당	지주이용간판	2016.12.19.	2019.12.18.	여	
30	□□□□식당	돌출간판	2016.12.31.	2019.12.30.		
31	□□□□□□□□	벽면이용간판(세로형)	2016.12.18.	2019.12.17.		
32	□□□□□□□□	벽면이용간판(가로형)	2016.12.30.	2019.12.29.		

【위법부당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및 제9조(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하여야 하며,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하며, 위반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함.
- 아울러, 「옥외광고물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에 따른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허가받거나 신고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군수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항은 “군수는 법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관리자 등에게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심천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기간만료 광고물 32건에 대하여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신고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알리고 연장허가 및 신고처리 되도록 했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으며, 이 중 14건은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해당되어 공중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사실상 감사대상기간 동안 옥외광고물 연장처리 관련 행정처리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기간 만료된 광고물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079,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간접공사비 정산 부적정**

【현 황】

공 사 명	도 급 액 (천원)	도 급 자	계 약 일	착 공 일	준 공 일	회수금액 (원)	비고
계(2건)						1,079,000	제경비포함
□□리 마을쉼터 조성 사업	14,856	㈜○○건설 김○○	2020.10.13	2020.10.14	2020.11.22	643,000	건강보험료 등
□□소하천 하상정비 및 수목제거사업	19,350	㈜○○건설 김○○	2020.10.29	2020.10.30	2020.11.25	436,00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위법부당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 정산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하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관계서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심천면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리 마을쉼터 조성사업>, <○○소하천 하상정비 및 수목제거사업> 등 2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간접공사비 사용내역이 누락 되었거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 금액이 잘못된 감액동의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및 검토를 소홀히 하여 상기 2건에 대한 **총합계금액 1,079,000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과다 지급된 공사비 1,079,00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0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767,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현 황】

(단위: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도급자	안전관리비 계약액	목적 외 청구액	목적 외 사용항목	비고
□□리 소교량 및 농로정비공사	계			767,000		회수
	21.04.14.~ 21.09.18.	(주)○○건설 김○○	601,110	601,110	공사중 안내표지판(소) 4, 안전헬스 10, 헤비콘 20, 야간안전등 10	
				165,890	제경비	

【위법부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4천만원(2천만원, 2020.7.1.부터)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안전관리비” 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 그런데 심천면에서는 상기 [현행]과 같이 <□□리 소교량 및 농로정비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상에 사용명목 중 ‘공사중 안내표지판(소)’, ‘안전헬스’, ‘헤비콘’, ‘야간안전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목에 대한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총금액767,000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내용】

- 심천면장은 과다 지급된 공사비 767,00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